

국제교류협력위원회 규정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성결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국제교류 지원 및 협력 관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국제교류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, 학생지원처장, 기획처장, 입학교류처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입학교류처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총장이 임명한다.

③ 위원회의 간사는 국제교류과 과장으로 한다.

제3조 (기능) 위원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·심의·건의한다.

1.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
2. 공동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
3. 국제교류와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
4. 대학 및 부설연구기관의 국제교류협정 등에 관한 사항
5. 해외유학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
6. 국제협력연구에 관한 사항
7. 자매결연 사업추진 및 교류에 관한 사항
8. 외국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
9. 기타 국제교류 자문 및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4조 (임기)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. 다만 결원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회의소집과 의결) ① 회의는 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국제교류협력위원회 규정(8-14-1)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(제2조)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